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6년도 주요사업장 방문 계획·····2면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의의안·····12면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검토보고서·····79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성주군의회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 군정 주요사업장 및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 파악 및 발전적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 실효성 제고

방문개요

○ 회 기 :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일 정 : 2026. 10. 19.(월) ~ 10. 22.(목) [4일간]

○ 장 소 :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외 13개소

○ 참 석 : 15명(의원 8,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2, 의사팀장 외 3)

○ 주요내용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민원현장 개선사항 및 대안 제시 등

총 평

○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 기획 및 관리 측면에서 보완·개선 사항이 도출되었음.

○ 특히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심산문화테마파크', '성주힐링승마체험장'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기획 및 공모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완공 후 과도한 운영비 부담 및 관리·운영의 어려움이 우려됨.

○ 따라서 향후 추진되는 모든 신규 사업은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 그리고 자생적인 운영 대책을 철저히 검토·확보한 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군정 운영의 내실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함.

사업장별 방문결과

10. 19.(월) [1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 조성사업	○ 친환경 조성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훼손된 수목이 많아 아쉬움을 표함. ○ 달빛마당 놀이터 위치 선정의 아쉬움을 지적하며, 주차공간 그늘막 및 기본 위생을 위한 급수시설과 화장실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함. ○ 관광과의 '썸머 워터바캉스'등 기존 프로그램 및 행사와 적극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와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함. ○ 가뭄 시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용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평상시 적정 수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량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안전성이 검증된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 향후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 하천 구역 내 놀이터 공간 조성 및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기본계획 반영 여부 및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쳤는지 철저한 확인을 요구함.	건 설 과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 노인·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등 비상 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실효성 있는 이동 대책 마련할 것. ○ 건물 규모 대비 주차 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당초 계획 대비 주차면수가 줄어들어 향후 이용객의 주차 난과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크므로, 종합적인 주차관리 대책 수립할 것. 아울러 추후 필요시 장애인 주차구역을 추가 확보해 주기 바람.	도시계획과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	○ 온세대플랫폼 조성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전하는 기존 노인회관 사무실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기존 유휴 공간이 방치되지 않도록 '성주읍 노인회 분회 사무실'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요청.	**주민복지과**
농로포장사업 (용각3리(용문) 농로정비공사)	○ 포장 두께 설계 기준은 20cm이나 실제 시공 측정 결과 18cm로 약 2cm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품질 관리상 아쉬움을 지적하며, 향후 각종 공사 시공시 표준 규격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함. ○ 이번 공사에서 진입도로 구간이 포장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부터 진입로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서 확보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월 항 면**

10. 20.(화) [2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농기계임대 사업소 (남부)	○ 임대사업소 진입로가 협소하여 진출입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진입로 확장 방안을 검토바람 ○ 주요 농기계가 비·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비가림 시설 설치 등 보관환경을 개선할 것 ○ 농기계 수리 담당 공무직의 업무 전문성을 감안하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농가수요 및 재배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임대 사업 운용할 것(예: 올해 참깨 수확량 증가로 탈곡기 수요가 많음.) ○ 계절근로자가 농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 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할 것 ○ 세척 불량 반납 및 무리한 가동 등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수리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 시 교육(지도) 철저	농업기술 센터
성주힐링 승마체험장 및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승마체험장의 주 이용 대상인 어린이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장 전 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것 ○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 및 적자 최소화를 위해 2단계 사업은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줄 것.	관 광 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사업장	○ 설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장의 방치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	환 경 과

10. 21.(수) [3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준공에 따라 폐쇄되는 기존 시설을 기후환경체험타운(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자원순환 사업소
	○ 적재된 폐부직포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적치장소를 정돈할 것	
	○ 공모사업 신청 시 영남에너지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포기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약을 바탕으로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당초 신청단계에서 추진되었던 영남에너지 대상 바이오가스 공급 계획이 준공단계에서 무산된 명확한 사유 제출	
	○ 바이오가스 처리와 관련하여 직영·민간투자 방식별 처리비용과 기간, SMP·REC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민간에만 REC 발급해주는 사유 포함)	
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 해당 시설의 운영 전문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 광 과
	○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구비되지 않은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	
	○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인 만큼, 다각적인 홍보 전략 수립하고, 각종 연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 관외 이용자로 인해 관내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이용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륜·금수강산면 등의 파크골프장에도 예약제 추진할 것	체육시설 사업소
	○ 인근 지자체(구미시 등)의 사례(관내 식당 이용 영수증 제출 시 파크골프장 무료 이용 등)를 벤치마킹하여, 체육시설 이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할 것	
	○ 관내 26개 종목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이 필요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성주 별고을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 국궁장 조성 시 군에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 투입 바람.	체육시설사업소
	○ 화살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궁장 내 보호망 등 보호시설 설치·마련 요구	
	○ 군 직영 실내 골프연습장 건립 검토할 것	
	○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하키 학생 선수들에게 전용 연습장 조성 등 관심과 지원 바람.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 농기계 수리 담당 공무직 인력 수급 실태 점검 및 처우 개선 검토할 것.	농업기술센터
	○ 대형·고가 농기계의 임대수입 대비 수리비 과다로 임대방법 재검토 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전체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불필요한 농기계를 정리하고 수요가 많은 농기계 늘려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것	
	○ 한해 운영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수요가 높은 일반 농기계는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보급하고 그 외에는 귀농 귀촌인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선별 운영하는 방안 검토	

10. 22.(목) [4일차]

사업장명	내 용	소관부서
성주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 ○ 반려인 유입을 촉진하고 시설 이용률 및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애견카페 조성 및 반려동물 운동장 규모 확대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 바람 ○ 인접 산업단지 노출에 따른 시각적 저해 및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바, 수목 식재 등 효과적인 차폐 시설 설치하고, 소음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할 것 **○ 녹지구역 내 수목의 처리기준(이식, 벌목, 매각 등)과 조치 결과, 녹지구역 훼손 발생 시 적용되는 행정조치 대한 상세자료 제출**	농 정 과
농로포장사업 (매수2리(세월)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석 쌓기 공사가 시행된 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실제 공종과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명확한 사업명을 부여하고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할 것	벽 진 면
성주호 별빛레저지구& 보도교 설치공사	○ 오일펜스 미설치로 성주호 내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공사 현장에 방제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어 안전사고 예방할 것 ○ 별섬지구의 개발과 별빛레저지구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보도교 조성과 함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 보도교에 분수와 조명설치 등을 통해 경관을 개선하고, 번지점프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되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한국농어촌공사-수상레저업자 간 수면 사용 허가 자료** **○ 성주호 보도교 설치 관련 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자료** **○ 수상레저 구역과 보도교 설치 구역 간 중복·충돌 여부 종합 검토 결과**	관 광 과

※ 요구자료

방문일자	사업장명	요구내용	소관부서
10.21. (수)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①당초 신청단계에서 추진되었던 영남에너지 대상 바이오가스 공급 계획이 준공단계에서 무산된 명확한 사유 ②바이오가스 처리와 관련하여 직영·민간투자 방식별 처리비용과 기간, SMP·REC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 (민간에만 REC 발급해주는 사유 포함)	자원순환 사업소
10.22. (목)	성주군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①녹지구역 내 수목의 처리기준(이식, 벌목, 매각 등)과 조치 결과, 녹지구역 훼손 발생 시 적용되는 행정조치 대한 상세자료	농 정 과
	성주호 보도교 설치공사	①한국농어촌공사-수상레저업자 간 수면 사용 허가 자료 ②성주호 보도교 설치 관련 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자료 ③수상레저 구역과 보도교 설치 구역 간 중복·충돌 여부 종합 검토 결과	관 광 과

조치결과 등 제출

○ 요구자료 제출 : 2026. 10. 30.(금)한

○ 조치결과(향후계획) 제출 : 2026. 11. 13.(금)한

별첨1)

202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처리상황부

연번기재	사업 또는 사업장명	*별빛이 흐르는 이천 친환경조성사업*	소관부서	*건설과*
방문 결과				
처리 상황 (조치, 향후 계획 등)				
진 도	완료( ), 추진중( ), 검토중( ), 조치불가( )			
완 료 (예 정)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경우 완료예정일 기재 예)2026. 12월 중*			
팀 장 (담당자)	*○○팀장 ○○○(행정전화번호)* *주 무 관 ○○○(행정전화번호)*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10. 23.(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발의 및 제출자〉
1.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2.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3.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4.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5.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6.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7.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	【성 주 군 수】
8.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 사용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 사업목적

- 가야산의 우수한 산림치유 환경요소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힐링공간 제공
- 당초 교환 대상 국·공유림 가감정 결과 토지 교환금액 차액 발생에 따라 교환 대상지 추가에 따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24. 5. 9.) 받은 내용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4. 10. ~ 2027. 5.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5,500백만원(도비2,500, 군비3,000)

구분	회계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합계 (백만원)	5,500	500	1,000	400	700	2,900	
도비	2,500	-	500	200	350	1,450	
군비	3,000	500	500	200	350	1,450	

4) 사업규모

- <취득> 932,323㎡ <토지처분> 1,293,274㎡

5) 사업내용

-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면적 79,000㎡
  (치유센터, 명상길, 숲체험장, 숲속명상원, 세족장, 쉼터 등)

6) 기준가격명세

- 당초안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24. 5. 9.)

(단위 : ㎡ , 천원)

구분	항목	소재지	지번	지적	㎡당 공시지가	기준가격
취득	토지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0.451	273,508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0.554	179,913
	소계			**931,201**		**453,421**
처분	토지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0.455	104,868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5,818	0.523	243,622
		초전면 용봉리	산67	235,000	0.364	85,540
	소계			**931,298**		**434,030**

- 변경안

단위 : (㎡ , 천원)

구분	항목	소재지	지번	지적	㎡당 공시지가	기준가격
취득	토지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0.479	290,489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0.588	190,955
		가천면 법전리	산144-1	140	0.577	81
		가천면 법전리	1151	982	3.370	3,310
	소계			**932,323**		**484,835**
처분	토지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0.454	104,638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3,762	0.542	251,359
		초전면 용봉리	산67	417,721	0.372	155,393
		초전면 월곡리	산56-2	181,311	0.750	135,984
	소계			**1,293,274**		**647,374**

7) 계약방법

- 국유림법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4. 5. :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5. 7. :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경상북도)
- 2025. 9. : 치유의 숲 조성공사 착공
- 2025. 10. : 산림청 국유림 사용허가
- 2026. 8. : 교환 대상지 가감정 시행 (성주군)
- 2026.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26. 12. : 산림청 토지 교환승낙서 제출
- 2027. 5. : 치유의 숲 조성사업 준공 및 교환 완료

나.「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행정재산(토지) 취득

1) 목적 및 용도

-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해당 필지를 취득하여 소규모 축사 및 빈건물 등 유해시설 철거를 통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5. 2. ~ 2027. 12.

3) 소요예산

- 5,0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토지매입> 22,332㎡

5) 사업내용

- 유해시설 정비사업(축사 철거 및 부지매입 등)

6)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연번	구분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계				18필지		22,332	2,085,946.4	
1	취득	토지	가천면 창천리	27	목장용지	2,676	270,365.2	농촌공간 정비사업
2				28	목장용지	1,794	181,253.8	
3				28-5	답	630	63,651	
4				20-5	답	149	15,009.2	
5				21-2	답	19	1,913.9	
6				25-3	목장용지	1,329	132,545.6	
7				25	대	506	76,912	
8				25-4	답	1,144	114,094.9	
9				26	답	1,465	146,109.3	
10				686-1	답	2,876	183,009.4	
11				686-2	답	1,791	113,967.3	
12				751	목장용지	1,520	148,504	
13				751-1	답	1,548	146,853.6	
14				740	답	657	64,188.9	
15				740-2	답	2,133	208,394.1	
16				739-1	답	528	51,585.6	
17				735-1	답	1,269	123,981.3	
18				735	대	298	43,607.3	

※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함

7)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2. :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선정
- 2025. 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7.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25. 10. : 감정평가 완료
- 2026. 7. : 의회 정책협의회 보고

- 2026.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상정
- 2026. 12.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농림부)
- 2027. 2. : 토지매입 및 보상완료
- 2027. 3.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道)
- 2027. 3. ~ 12. : 사업시행 및 완료

다.「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행정재산(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

2)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31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2027. 1. ~ 2029. 12.

4) 소요예산

- 3,400백만원(건축비 등/ 국비 1,200, 도비 300, 군비 1,900 / 일반회계)

5) 사업규모

- <건물신축> 연면적 720㎡(지상 2층), 부지면적 926㎡

6)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1동)

7)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구분	방법	대상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신축	건물	성주읍 삼산리	31번지 일원	공동숙소	720	3,400,000	군유지

※ 기준가격은 건축비 등에 의함

8) 계약방법

- <건물 신축> 공개경쟁입찰

9) 추진현황 및 계획

- 2026.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10. :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 2026. 11. : 서면, 현장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7. 1. :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 2028. 1. : 공사 착공
- 2029. 10. : 공사 준공

2027년도 정기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부지	22	954,655	2,570,781				23	955,375	5,970,781	
		건물				1	720	3,400,000				
		기타										
	1. 매 입	부지	18	22,332	2,085,946				18	22,332	2,085,946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부지	4	932,323	484,835				4	932,323	484,835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부지										
		건물				1	720	3,400,000	1	720	3,400,000	
		기타										
처분	계	부지	4	1,293,274	647,374				4	1,293,274	647,374	
		건물										
		기타										
	4. 매 각	부지										
		건물										
		기타										
	5. 양 여	부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부지	4	1,293,274	647,374				4	1,293,274	647,374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계										
		부지										
		건물										
		기타										

2027년도 정기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계	19건					
1	토지	가천면 창천리 27	2,676	270,365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2	토지	가천면 창천리 28	1,794	181,253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3	토지	가천면 창천리 28-5	630	63,651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4	토지	가천면 창천리 20-5	149	15,009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5	토지	가천면 창천리 21-2	19	1,913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6	토지	가천면 창천리 25-3	1,329	132,545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7	토지	가천면 창천리 25	506	76,912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8	토지	가천면 창천리 25-4	1,144	114,094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9	토지	가천면 창천리 26	1,465	146,109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0	토지	가천면 창천리 686-1	2,876	183,009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1	토지	가천면 창천리 686-2	1,791	113,967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2	토지	가천면 창천리 751	1,520	148,504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3	토지	가천면 창천리 751-1	1,548	146,853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4	토지	가천면 창천리 740	657	64,188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5	토지	가천면 창천리 740-2	2,133	208,394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6	토지	가천면 창천리 739-1	528	51,585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7	토지	가천면 창천리 735-1	1,269	123,981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8	토지	가천면 창천리 735	298	43,607	2027년 2월	농촌공간 정비사업	
19	건물	성주읍 삼산리 31 일원	720	3,400,000	2029년 12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2027년도 정기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매각대상수량	과표또는평가액	매각시기	매각사유	매수희망자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해	당	없	음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027년도 정기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정 가액	교환 시기	교환 사유	교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1		취득	임야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4	290,489	2027년 상반기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산림청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190,955				
				가천면 법전리 산144-1	140		81				
			답	가천면 법전리 1151	982		3,310				
		처분	임야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4	104,638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3,762		251,359				
				초전면용 봉리산67	417,721		155,393				
				초전면 월곡리 산56-2	181,311		135,984				
계	부지	취득	임야	4필지	932,323	4	484,835				
		처분	임야	4필지	1,293,274	4	647,374				
	건물	취득									
		처분									
	기타	취득									
		처분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부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 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2027년도 정기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리계획(변경) 참고자료

위 치 도(가천면 법전리 산123, 산144)



조성 계획안



교환대상지 내역

구분		소재지	면적(㎡)	2026년 공시지가 (천원/㎡)	2026년 8월 감정평가 (천원/㎡)	기준가격 (천원)	비 고
국유림 취득	당초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0.479	1.400	737,463	자연환경 (526,759.5㎡)
					1.800	143,440	농림 (79,688.5㎡)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0.588	1.500	451,558	자연환경 (301,038.5㎡)
					1.800	42,686	농림 (23,714.5㎡)
		소 계	931,201			1,375,147	
	추가	가천면 법전리 산144-1	140	0.577		80	
	추가	가천면 법전리 1151(답)	982	3.370		3,309	
		합 계	932,323			1,378,536	
공유림 처분	당초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0.454	0.900	207,432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3,762	0.542	0.980	454,487	내륙철도 편입면적 제외 (2,056㎡)
		초전면 용봉리 산67	235,000	0.372	1.100	258,500	분할 예정
		소 계	929,242			920,419	454,728천원 지급 필요
	변경	초전면 용봉리 산67	182,721	0.372	1.100	200,993	잔여면적
	추가	초전면 월곡리 산56-2	181,311	0.750	2.100	380,753	교환 시 감정가에 따라 분할 추진
		합 계	1,293,274			1,502,165	
		차 액				123,629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가천면 창천리 27 외 17필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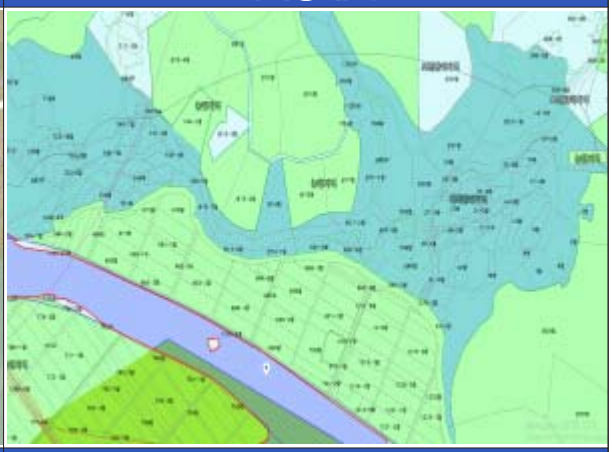

현장사진 1(창천리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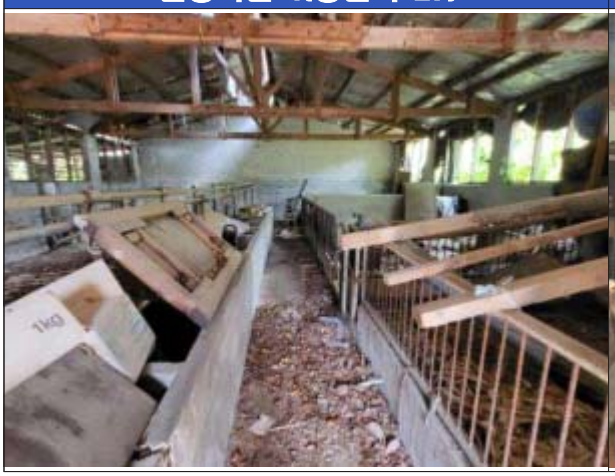

현장사진 2(창천리 31-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건물 취득 참고자료

위 치 도 (성주읍 삼산리 31, 31-4)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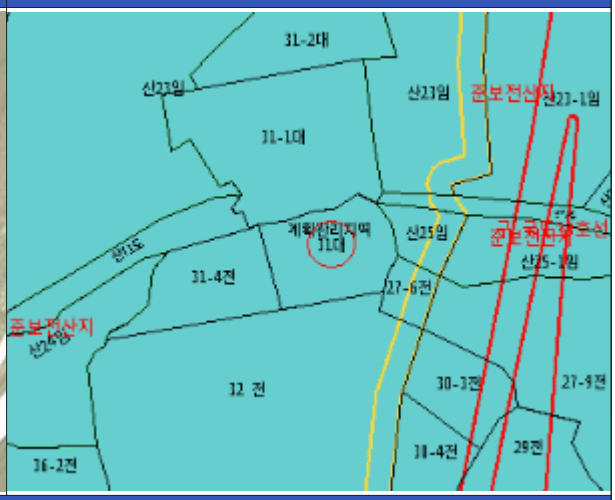

현장사진 (성주읍 삼산리 31, 31-4)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 유공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과 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8조 1항의4호)

- (신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

나. 보훈예우수당 인상(안 제8조 2항)

- (현행) 10만원 → (개정) 15만원

다. 수당의 지급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조 4항)

- (신설) ④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2007(2026. 8. 13.)]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9583(2026. 8. 20.)]
3)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6. 8. 26. ~ 9. 15.)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한다.

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자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 15만원 ----------. ----------.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 ③ (생 략)	제11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관계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 개정으로 인해 보훈예우수당이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함

2. 비용 추계전제

가. 보훈예우수당 지원 인원 : 400명(26년 7월말 기준)

나. 연도별 소요 예산 산출 기준

- 개정 전 : 100,000원 × 400명 × 12개월 = 480,000천원
- 개정 후 : 150,000원 × 400명 × 12개월 = 720,000천원(증 240,0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보훈예우수당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보훈 예우수당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소계(b)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 총 비용(a-b)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4. 재원조달 방안

가. 보훈예우수당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금	–	–	–	–	–	–
시·군비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720,000	720,000	720,000	720,000	720,000	3,60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상세내역

가. 보훈예우수당

(단위 : 명, 천원)

구분 \ 년도	2026년			2027년			증감액
	인원수	단가	지급액	인원수	단가	지급액	
합계	400	-	480,000	400	-	720,000	240,000
보훈 예우수당	400	100	480,000	400	150	720,000	240,000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 용어 수정(안 제3조)

- 성차별적, 비하적 어감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이하 ‘미망인’이라 한다)”를 “사망자의 배우자(이하 ‘배우자’이라 한다)”로 변경

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4조 1호 및 3호)

- 참전명예수당 : (현행) 15만원 → (개정) 23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현행) 8만원 → (개정) 12만원

다. 수당의 지급 방법을 추가 규정(안 제7조 3항)

(신설) ③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가족지원과-42012(2026. 8. 13.)]
2) 규제심사 : 해당없음[기획예산실-9583(2026. 8. 20.)]
3)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6. 8. 26. ~ 9. 15.)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 ‘미망인’”를 “이하 ‘배우자’”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15만원”을 “23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8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이하'미망인'이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이 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 ---------- ----------이하' 배우자'----------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 ---------- ---------- ----------.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1. ---------- ------ 23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 월 8만원	3. ---------- ---------- 12만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② (생략)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채무불이행 등) 대리 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 · 시행 · 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 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제1호및제3호 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월 15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배우자 복지수당이 “월 8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함.

2. 비용 추계전제

○ 참전명예수당

- 지원 인원 : 240명(26년 7월말 기준), 매년 지원인원 약 10명 감소(사망 등)
- 개정 전 : 150,000원 × 240명 × 12월 = 432,000천원
- 개정 후 : 230,000원 × 240명 × 12월 = 662,400천원(증 230,400천원)

○ 배우자 복지수당

- 지원 인원 : 260명(26년 7월말 기준)
- 개정 전 : 80,000원 × 260명 × 12월 = 249,600천원
- 개정 후 : 120,000원 × 260명 × 12월 = 374,400천원(증 124,80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세출	참전명예수당	662,400	634,800	607,200	579,600	552,000	3,036,000
	배우자 복지수당	374,400	374,400	374,400	374,400	374,400	1,872,000
	소계(b)	1,036,800	1,009,200	981,600	954,000	926,400	4,908,000
□ 총 비용(a-b)		-1,036,800	-1,009,200	-981,600	-954,000	-926,400	-4,908,000

4. 재원조달 방안

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복지수당

(단위 : 천원)

구분 / 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일반회계						
	ㅇㅇ특별회계						
	ㅇㅇ 기금						
시·군비		1,036,800	1,009,200	981,600	954,000	926,400	4,908,000
민간							
기타							
합계		1,036,800	1,009,200	981,600	954,000	926,400	4,908,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년도 / 구분	2026년			2027년			증감액
	인원수	단가	지급액	인원수	단가	지급액	
합계	500	-	681,600	490	-	1,009,200	327,600
참전 명예수당	240	150	432,000	230	230	634,800	202,800
배우자 복지수당	260	80	249,600	260	120	374,400	124,800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성주군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충시설인 백세각과 연계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 아울러, 기념공원을 교육 및 관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초전면 고산리 525-1번지 일원
- 면 적 : 16,794㎡

○ **의견청취 내용**

-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가. 군관리계획 결정(안)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독립운동 기념공원	역사공원	초전면 고산리 525-1번지	-	증)16,794	16,794	-	

나.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독립운동 기념공원	• 역사공원 신설 – A=16,794㎡	• 현충시설인 백세각과 연계한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의 장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함

다.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라. 공원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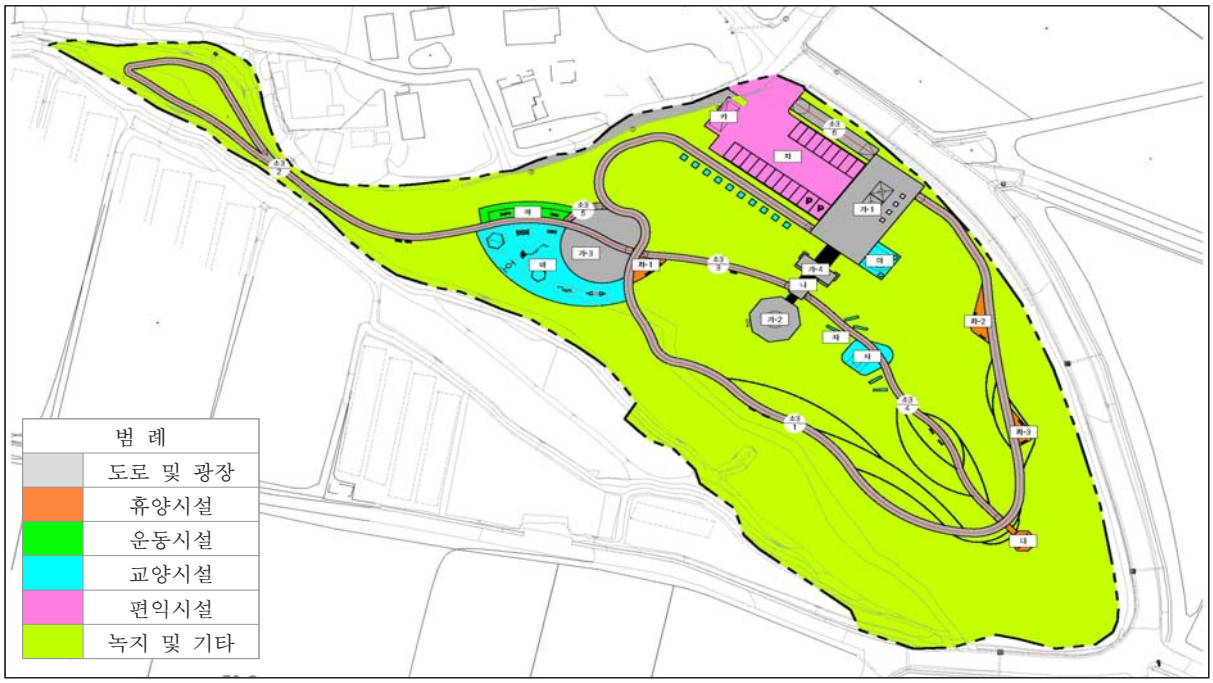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 2026. 9. : 입안 및 열람공고
- ❍ 2026. 10. : 관련부서(기관)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 ❍ 2026. 11. : 군계획위원회 심의
- ❍ 2026. 12. : 결정·고시

4. 참고자료 [조감도]



관련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개요

- 계 획 명 :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 위 치 :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 면 적 : 7,911㎡

나. 의견청취 내용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공공청사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	증) 7,911	7,911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 공공청사 신설 - A = 7,911㎡	· 초전면 보건지소 이전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과

○ 2023. 0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

○ 2025. 04. 주민자치위원회 부지 선정

○ 2025. 06. 주민공청회 개최

○ 2025. 1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6. 09. 주민의견청취, 군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 10. 군의회 의견청취

○ 2026. 11.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4. 군관리계획 현황 (현재)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7,911	100.0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층 수 : 4층

< 군관리계획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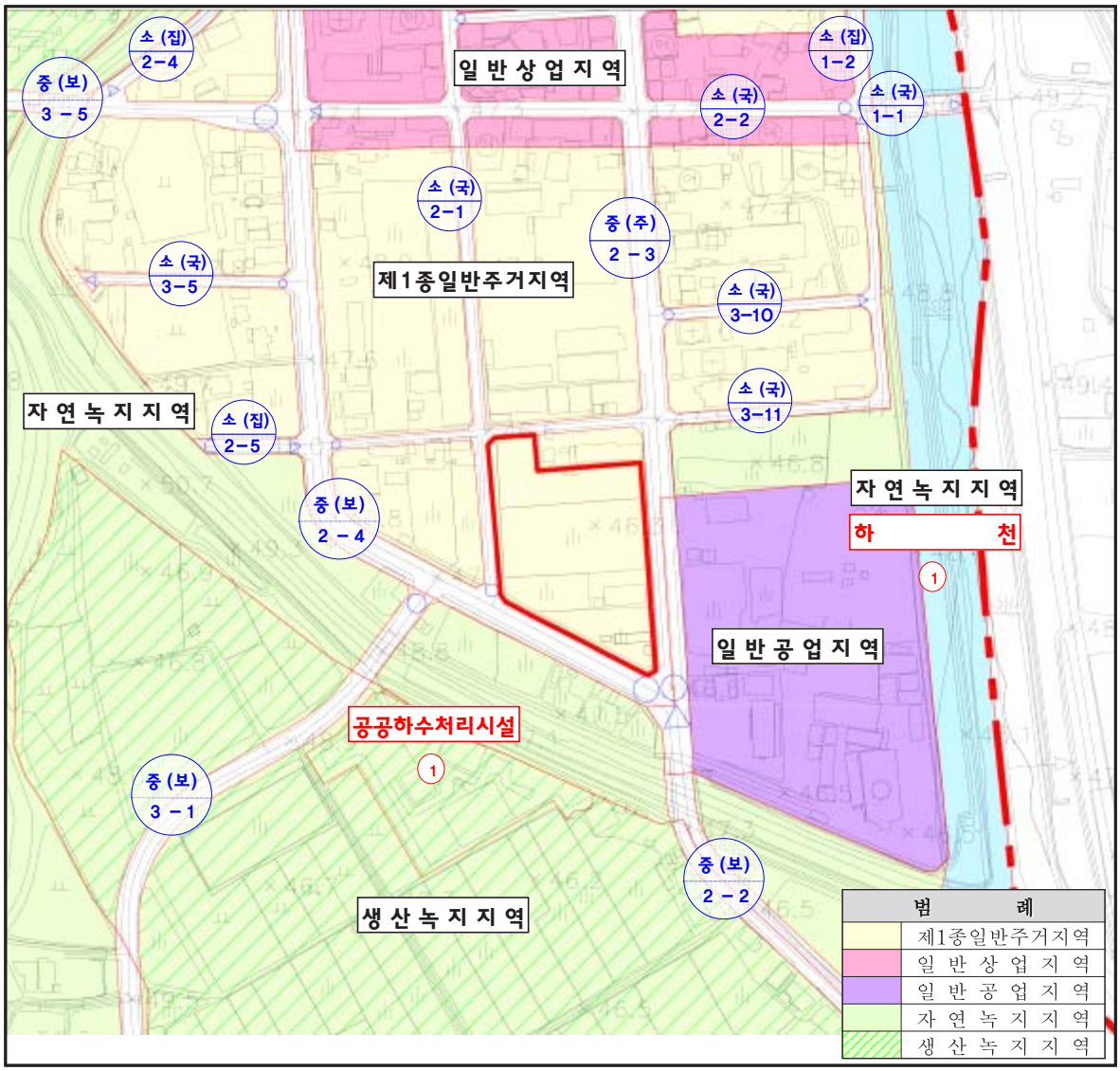

5.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공공청사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	증) 7,911	7,911	-	

<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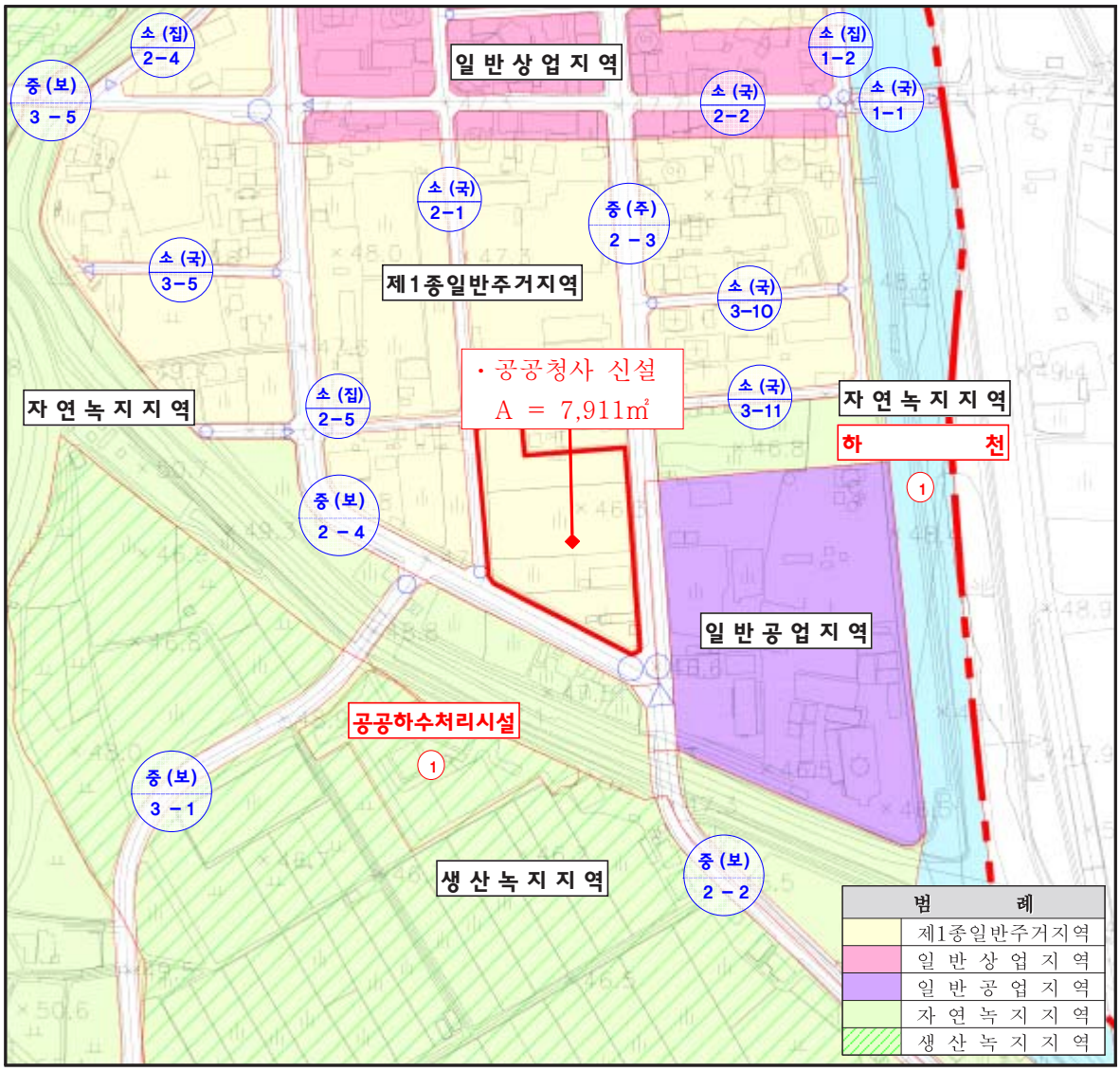

[참고자료]

편 입 토 지 조 서

연번	행정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합 계		-	-	7,911	7,911	-
1	대장리	688-3	답	2,096	2,096	성주군
2	대장리	689-1	답	504	504	성주군
3	대장리	689-2	답	1,367	1,367	성주군
4	대장리	689-3	답	1,269	1,269	성주군
5	대장리	690-1	대	562	562	이*동
6	대장리	690-4	답	932	932	성주군
7	대장리	690-8	답	69	69	이*동
8	대장리	690-11	답	847	847	이*동
9	대장리	691-4	답	265	265	성주군

편 입 용 지 도


686-4 창
679-2 대
679-5대
687-1 창
696-3 답
695-2 답
696-1대
687-2 대
681-1답
687-6 대
681-2도
697-2도
695-3 답
682-3답
688-9 대
688-2 대
701 대
700-1 대
700-2 도
710-60 도
688-3답
682-6답
682-7도
710-65 과
710-11답
689-3답
689-1답
689-4도
690-2도
682-4장
689-2답
683-1 답
690-8답
690-11 답
690-1 대
690-5도
683-5 답
686-2도
684-10도
690-4답
686-1도
710-56과
683-7 답
683-4도
691-4답
691-8도
690-10답
695-1도
683-6 대
684-1도
684-2도
691-11 답
684-13 장
691-12 답
747-25천
684-6답
682-1도
682-2도
684-7도
684-3 장
747-1천
877-74천
877-73천
684-11도
범 례
표 시
구 분
국 유 지
공 유 지
군 유 지
사 유 지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 쇠퇴하는 도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을 제정함.

○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로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야 함.(기수립 : '19년 6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 명 :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나. 의견청취 내용

- 도시재생권역 및 권역별 도시재생전략
  · 지역의 여건·특성 종합 및 권역별 특화재생 전략방안 도출
- 성주군 도시재생 방향
  ·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력 회복, 지속운영 기반 기축을 목표로 한 발전전략 도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가능지역 도출(변경)
  · 도시재생 공모사업 유형별 규모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조정
  · (기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변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개소

<기정>	
지역명	면적(㎡)
성주시장 일원 <사업완료>	11만㎡
성주읍사무소 일원 <사업완료>	12만㎡
초전면 소재지	13만㎡

<변경>			
지역명	면적(㎡)	유형	비고
성주시장 일원 <사업완료>	2.7만㎡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구역 조정
성주읍사무소 일원 <사업완료>	12만㎡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유지
초전면 소재지	13만㎡	근린재생형	유지
성주읍1	16.3만㎡	근린재생형	신규
성주읍2	13.9만㎡	근린재생형	신규
가천면	14.6만㎡	근린재생형	신규



다. 세부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안)

활성화지역	위치 및 면적	주요 내용	비고
성주시장 일원	성주읍 경산리 597-2 일원 (약 27,000㎡)	- 성주시장 등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활성화 - 주민 문화예술 활동, 주민 커뮤니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등 정주만족도 제고	구역 조정 <사업완료>
성주읍 사무소 일원	성주읍 경산리 2097-2 일원 (약 120,000㎡)	- 1단계(창의문화교류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내 중심가의 상권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 도모 - 공공복지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유지 <사업완료>
초전면 소재지	초전면 대장리 618-6 일원 (약 130,000㎡)	- 성주 북부권역 중심지 기능회복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체류형 시설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	유지
성주읍1	성주읍 경산리 3-12 일원 (약 163,000㎡)	- 지적 불부합지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원도심 민간 자율적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 - 주거환경 정비 및 생활 밀착형 활력인프라 공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신규
성주읍2	성주읍 성산리 2095-8 일원 (약 139,000㎡)	- 기반시설 정비로 원도심 민간 자율적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 - 원도심 주거환경 및 활력인프라 공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신규
가천면	가천면 창천리 585 일원 (약 146,000㎡)	-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세대 및 계층별 공공복지 및 생활환경 조성	신규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과

○ 2026. 01. :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6. 05.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26. 09. : 주민공청회 개최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 11. : 군의회 의견 청취

○ 2026. 12. :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7. 01.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계획 승인·고시

【참고자료】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 동향 대응

물리적 도시재생 중심 → 정비+개발을 병행하는 도시재생 중심으로 변화

before
쇠퇴 원도심 / 노후주거지 중심의
물리적 재생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 정비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쇠퇴한 구도심 일원에 대한 지원 중심

before → future

초기 도시재생 지원 단계 (2007~2016년)
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개발을 위한 국가 R&D 추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도시재생사업 지원 : (선도지역) 13개소 / (일반지역) 33개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2017~2021년)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도시 혁신사업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개소	87개소	117개소	116개소	99개소	68개소	487개소

이후, 도시재생패러다임 전환
지역특화 도시재생
쇠퇴한 지역에 복합개발을 통한 경제거점 조성
지역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선도

• 2025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 현황

유형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	합 계
개소	1개소	15개소	10개소	26개소

• 도시재생사업 지원 동향

-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지원
-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 및 사업 추진력 확보 여부 검토
- 사후 운영관리의 전문화 강조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검토

future
수요 기반의 실행사업 중심의
정비형 재생
미래 시대의 혁신 거점으로
역할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도심 육성을 위한
실행력이 담보된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기본방향

▶ 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사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2-4-5.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

사업별 면적 상한 제시	인구 규모별 활성화지역 지정 개소 차등화
→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 30만㎡ 이하	(인구 30만 미만 도시 : 성주군 해당)
→ 도시경제기반형 50만㎡ 이하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개소 이내 지정가능
	→ 군 지역은 2개소 내외로 지정(종료사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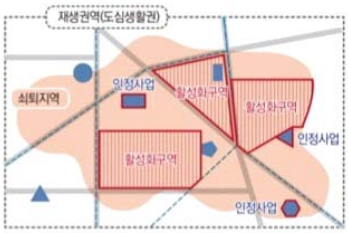

재생구역(도심생활권) SOC공급가능구역 행정구역구분선
쇠퇴지역 도시재생권역지정 도로선

▶ 2026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유형 구분	근린재생형(30만 ㎡ 이하)			도시경제기반형(50만㎡ 이하)	
		주거재생형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혁신지구
기존	면접 규모	5만㎡ 이하	5만㎡ ~10만㎡	10만㎡ ~15만㎡	20만㎡	50만㎡	50만㎡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산업, 지역경제
	사업추진 지원근거	국가균형발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기금 활용 등)	수립필요				
	지특회계계정	생활기반계정(자율편성)	경제발전계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역	저층 단독주택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	상업·창업·관광·문화예술	역세권·산단·항만	역세권·산단·항만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 정비_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 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 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 복지 편의시설
	국비지원	50억원(지원3년)	100억원(지원 4년)	100억원(지원 4년)	150억원(지원 5년)	250억원(지원 3년-6년)	250억원(지원 3년-6년)

변경 | 인정사업 | 우리동네살리기형 | 노후저층주거지정비 | 지역특화 재생 | 경제재생 거점사업

성주군 도시재생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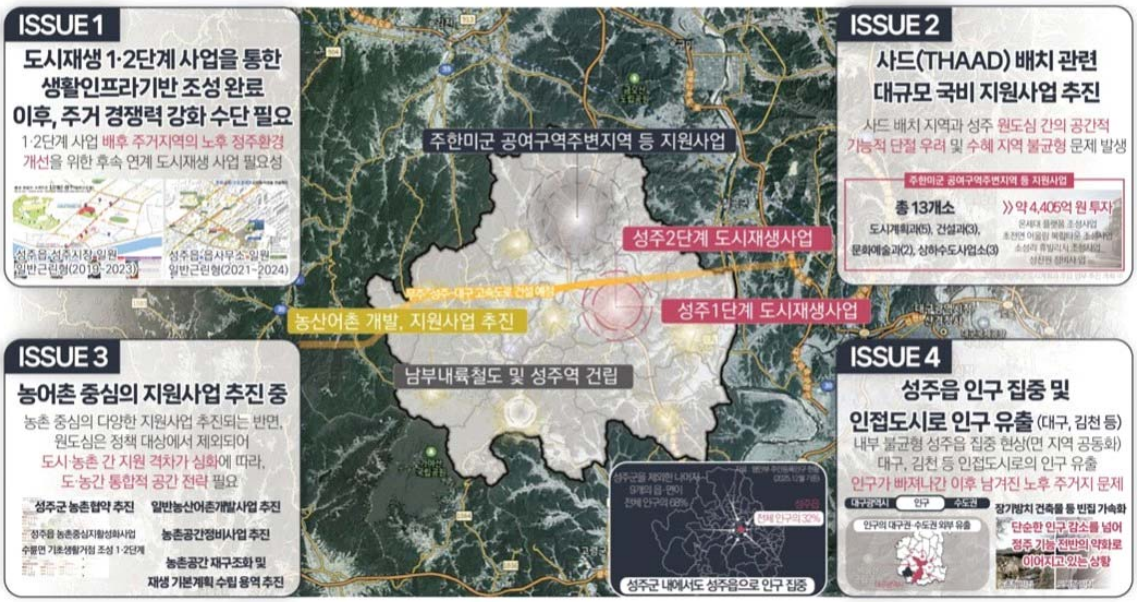

현황종합 및 시사점 도출



성주군 도시재생권역 및 권역별 도시재생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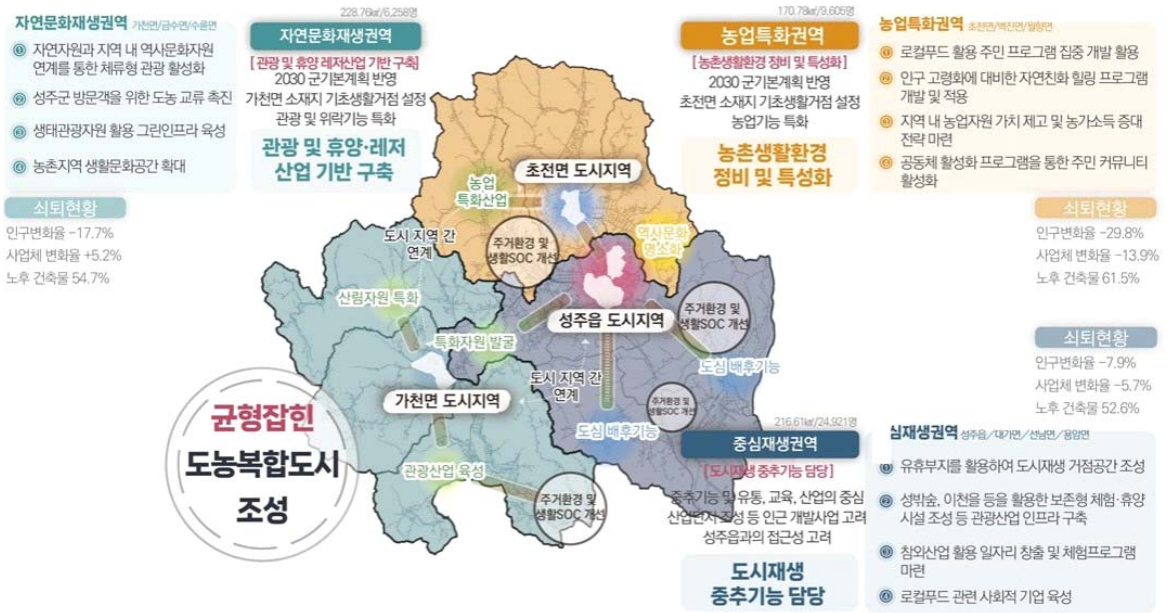

성주군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설정



성주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가능지역 도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방향 _ 성주시장 일원 (구역조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방향 _ 성주읍사무소 일원 (유지)

성주읍사무소 일원(기정)

- 위치 : 성주읍 경산리 2097-2 일원
- 면적 : 약 120,000㎡

▶도시재생전략 : 근린재생형(구일반도시형)

대상지 현황 및 특성	정비방안
• 구도심의 낡고 쇠퇴한 환경과 상권쇠퇴로 인한 활력저하 •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낮은 밀도의 폐쇄적 공간구조	• 1단계 (창의문화교류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내 중심가의 상권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 도모 • 공공복지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성주 1단계 재생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현안 맞춤 도시재생 방향

별의별 어울림 복합센터 건강문화 캠퍼스	공공복지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별의별 문화마당 조성 어르신, 청년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생활밀착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중심 휴식공간	생활인프라 개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방향 _ 초전면 소재지 (유지)

초전면 소재지(기정)

- 위치 : 초전면 대장리 618-6 일원
- 면적 : 약 130,000㎡

▶도시재생전략 : 근린재생형

대상지 현황 및 특성	정비방안
• 면단위 행정·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기능 쇠퇴 • 초전면 일원 사드기지로 인한 지역적 편견과 심리적 위축	• 성주 북부권역 중심지 기능회복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체류형 시설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주거환경정비 및 삶의 질 제고

▶지역현안 맞춤 도시재생 방향

주거지 및 골목길 동행사업 골목길 안전마을 사업	삶터 중심, 마을 가꾸기
문화대장거리 조성 평화공원 조성	마을중심, 이야기 만들기
대장마루 프로그램 도시재생지원사업	교류중심, 기반 만들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방향 _ 성주읍 1 (신규)

성주읍1(신규)

- 위치 : 성주읍 경산리 3-12 일원
- 면적 : 약 163,000㎡

▶도시재생전략 : 근린재생형

대상지 현황 및 특성	정비방안
• 지적 불부합지 다수 분포 (부정형 필지 및 맹지 多) •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낙후 • 기추진 재생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가능 지역	• 지적 불부합지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원도심 민간 자율적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 • 주거환경 정비 및 생활 밀착형 활력인프라 공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민간 주택정비를 견인하여 신규주택 공급 및 주택정비 활성화

▶지역현안 맞춤 도시재생 방향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빈집 및 공폐가 철거	주택정비 활성화
수요 맞춤형 편의시설 조성 지적 불부합지 및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안전마을 조성 가로경관 개선	생활편의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방향 _ 성주읍 2 (신규)

성주읍2(신규)

- 위치 : 성주읍 성산리 2095-8일원
- 면적 : 약 139,000㎡

▶도시재생전략 : 근린재생형

대상지 현황 및 특성	정비방안
• 저층 노후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낙후 •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성 부족 측면에서 민간주도의 전면 재개발은 어려운 지역	• 기반시설 정비로 원도심 민간 자율적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 •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 및 활력인프라 공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민간 주택정비를 견인하여 신규주택 공급 및 주택정비 활성화

▶지역현안 맞춤 도시재생 방향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거점	주민교류 및 공동체 강화
공동체 역량강화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커뮤니티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주민제안사업 추진 집수리 정비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인프라 정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방향 _ 가천면 (신규)

가천면(신규)

- 위치 : 가천면 창천리 585 일원
- 면적 : 약 146,000㎡

▶도시재생전략 : 근린재생형

대상지 현황 및 특성	정비방안
• 상대적으로 물리적 쇠퇴가 심한 지역으로 주거재생 및 면 중심지 활성화 필요 •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기반시설 열악 지역	•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세대 및 계층별 공공복지 및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주거환경 속
지역문화와 복지서비스 강화

▶지역현안 맞춤 도시재생 방향

주민 헬스케어 공간 문화공간, 공동육아 등	공공복지 및 생활환경 조성
정주환경 개선 포켓주차장 및 공원 조성	주민친화적 골목길 조성
주민조직 발굴 및 역량강화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공동체 회복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3개 지표와 성주군 특성에 적합한 지표,
도시재생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발굴하여 최종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유형	- 근린재생형	- 근린재생형	- 근린재생형	- 근린재생형
위치	- 성주읍 1	- 가천면	- 초전면 소재지	- 성주읍 2
면적	- 163,000㎡	- 146,000㎡	- 130,000㎡	- 139,000㎡
지역특성	- 기 추진한 성주시장 및 성주읍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파급효과 - 밀집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	- 후보지 중 쇠퇴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재생사업 필요 지역 - 지역 전통상권 활성화 및 장소성 강화와 유휴부지 공간 활용 필요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확정으로 다수의 사업비 확보하여 재생사업과의 일부 사업 중복 우려	- 대상지 인근 성주읍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파급효과 극대화 가능 - 추후 국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가 필요
기본방향	[다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성주읍] - 소규모 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 정주여건 개선사업 - 생활편의 지원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천면 활력재생] - 세대 및 계층별 공공복지 및 생활환경 조성 - 주민친화적 골목길 조성 - 골목길 공동체 회복	[평화의 상징,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장마을] - 지역 내 유무형 역사자산 장소 중심 재생 -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 자생력 강화 등	[다같이 어울리는 우리마을, 새로 태어나는 성주읍] - 주민교류 및 공동체 강화 커뮤니티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인프라 정비
현황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2026년 7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업분야교류 협정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베트남 지방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권한이 다낭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정 체결 대상을 다낭시 화방면에서 다낭시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변경

1) 당 초 :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

2) 변 경 : 베트남 다낭시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세부조건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지자체간 협력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3. 추진실적

연도	도입 지자체	도입인원 (명)	이탈자 (명)	이탈률 (%)	비고
2023	필리핀 아팔릿시	260	3	1.1%	
	필리핀 마갈랑시	271	37	13.6%	
2024	필리핀 아팔릿시	390	6	1.5%	
	필리핀 마갈랑시	235	72	30.6%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3	2	6%	
	필리핀 로렐시	121	25	20.6%	
	라오스	153	-	-	
2025	필리핀 아팔릿시	402	14	3.5%	
	필리핀 루바오시	54	-	-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2	-	-	
	필리핀 로렐시	12	5	41.6%	
	라오스	1,295	1	0.007%	
	베트남 협득면	8	4	50%	
2026 상반기	필리핀 아팔릿시	207	23	11%	
	필리핀 루바오시	32	2	6.2%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20	-	-	
	라오스	1,197	6	0.5%	
	베트남 협득면	65	8	12.3%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및「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나.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2) '26년 체결 협정서(안)

3)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참고 1]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①「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참고 2] '26년 체결 협정서(안) – 별첨

[참고 3]

체결 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 일반현황



□ 베트남 다낭시

○ 소　　속 : 베트남 중앙직할시

○ 면　　적 : 약 11,860㎢

○ 인　　구 : 약 307만명

○ 언　　어 : 베트남어

○ 주요산업 : 농림수산업, 관광·서비스업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따른 비용 예상액은 없음

4. 작성자

농촌인력지원단 농촌인력2팀장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다낭시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제1조. 목적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과 베트남 다낭시 (아래에서는 "양측"이라 칭함)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는 아래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아래에서는 "성주군"라 칭함)*
2. 베트남 다낭시 *(아래에서는 "다낭시"이라 칭함)*

제3조. 합의

1. 양측은 본 업무협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2.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4조.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본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은 대한민국 및 베트남의 법률과 국제 조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프로그램"이라 약칭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파견하는 성주군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서 규정한다.

본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 동안 성주군의 농업 지역에서 단기간 계절근로를 하는 사업이다.

제5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1. 양측은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본 업무협약에 체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양측은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 업무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령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각 합의서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법률, 규정 및 현행규정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다. 계약 분쟁이 있을 시 계약체결 양측이 현행 법률규정에 맞게 관할기관에 고소할 권한이 있음에 동의한다.

라. 양 국가의 법률을 위반할 경우 본 업무협약 이행에 관한 양측 기관과 개인을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마. 이행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최선을 다한다.

바. 양측 및 고용주는 항공료, 행정비용 등 기본비용을 제외한 별도 수수료(대가)를 계절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사. 양측은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일방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중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❶ 국내 지자체 또는 외국 지자체가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단체에 업무협약 체결 업무를 위임 또는 근로자 모집·선정·배정 등 업무를 위임한 경우

❷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 제도 운영 관련 유무형의 대가(필수 행정비용을 제외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❸ 그 밖에 계절근로 제도운영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아. 양측은 근로자에게 행정비용을 부과할 경우 그 상세 내역과 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경상북도 성주군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 계절근로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Visa)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에서 초청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나. 국내 입국한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에게 배정하며,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안내·교육·상담·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다.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현황을 관리한다.

라. 계절근로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고, 숙소 및 작업장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탈(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마. 성주군은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및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바. 폭행,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해당 근로자를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피해자 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사. 부속합의서의 제4항에 따라 계절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조건 이행을 보장한다.

3. 베트남 다낭시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가. 성주군에서 제시한 계절근로자 선발·송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 업무협약(MOU) 체결, 근로자 모집·선정·송출 등 계절근로자 관련 중요 업무는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다. 출국 전 근로자에게 대한민국 지자체 정보, 이탈(불법체류) 시 불이익, 성실하게 계약기간 동안 근로 시 재입국 기회 보장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라. 성주군에서 요청하는 입국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자를 송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베트남 정부의 해외취업허가, 코로나19 등 포함)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지원을 보증한다.

마. 성주군의 내부사정으로 근로자를 초청하지 않거나 사증(Visa)을 취소할 경우에도 협조하여야 한다.

바.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불법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법무부의 규정*에 따라 다낭시와의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MOU)은 중단된다.

* ① 다낭시에서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20% 이상 이탈 시 다낭시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②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25명 이상이면서 5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③ 베트남 전체 계절근로자 중 이탈인원이 35명 이상이면서 70% 이상 이탈 시 베트남 내 모든 지자체는 3년간 송출 중단(비자 발급 제한)

사.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여 성주군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탈 발생 시 가족에게 자진 귀국 설득 요청 및 본국 귀국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파견 등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 계절근로자 무단 이탈(불법체류)로 인한 대한민국 농어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 근로자가 계절근로를 종료하면 즉시 귀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자. 계절근로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차. 고용주의 잘못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계절근로 활동이 중단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즉시 본국으로 귀국 조치한다.

카. 성주군의 재입국 추천 확인을 받은 계절근로자는 다음 차수에 우선 선발한다.

타.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중 인권침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계절근로자에 대해 성주군이 재입국 추천, 계절근로 재참여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낭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이행조항

1. 본 업무협약서는 2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대표자 서명일부터 발효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서 무단 이탈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 국가(또는 지방정부)로 확정하지 않은 경우와 양측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고, 어느 한쪽이 협약 종료 또는 수정을 원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협약 사항 이행 과정 중 애로사항이 있을 시 양 국가의 법률 규정과 실정에 맞게 협의 사항을 조정(변경)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한다.

본 업무협약은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및 2026년 월 일 베트남 다낭시에서 체결되며, 영어와 한국어로 각 2부 동일하게 작성하여 양측이 각 1부씩 보관하되, 해석이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어본을 해석상 기준으로 한다.

2026년 월 일

대한민국 성주군을 대표하여 성주군수	베트남 다낭시를 대표하여 다낭시 인민위원회 인민위원장
_____	_____

붙임 부속합의서 1부

[붙임] 부속합의서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

1. 업무협약(MOU) 주체

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 주소: 대한민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 주관부서: 농촌인력지원단
- 연락처: 054-930-6282 , 팩스/이메일: hyein0204@korea.kr

나. 베트남 다낭시 인민위원회

- 주소: 19th Floor, Danang City Administrative Center, No.24 Tran Phu Street, Hai Chau Ward, Danang City, Viet Nam
- 주관부서: 다낭시 인민위원회
- 연락처: +84 985 220 609 , 팩스/이메일: trangltm@danang.gov.vn

2. 선발 대상 및 기준

가. 선발 대상: 베트남 관할기관에서 법적 거주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다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출국에 제한이 없는 자

나. 나이: 만 25세 이상 ~ 만 40세 이하의 남, 여

다. 직업: 농업 종사자

라. 부양가족이 있으며, 해당 마을의 유력 인사 2명이 보증한 자(보증비용 없음)

마. 제외대상: 색약·색맹, 범죄경력자,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마약 복용자, 과거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한 자, 임신 중인 자, 출산한 지 1년 이내인 자, 기타 대한민국 입국이 적합하지 않은 자

바. 계절근로자로 선정된 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15일 이내에 전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베트남에서 직접 주관하는 기본교육(문화, 법률, 노동안전, 한국어 등) 비용, 범죄경력증명 비용, 여권 및 비자발급 수수료, 건강검진비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와 필수 행정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3. 송출 인원 및 시기

가. 송출인원: 송출 근로자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나. 송출시기: 상반기(1~6월) 또는 하반기(7~12월) 중 성주군 요청 시기에 맞춰 송출

4. 근로조건

가. 근로계약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정한다.

※ 근로자는 입국 즉시 예정된 체류지로 이동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근로를 시작해야 하며, 국내 지자체 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의무교육에 참여해야 함

나. 임금 지급

-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며, 매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한다.

※ 총 체류기간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의 임금 보장 : 총 근로시간 × 연도별 최저시급

- 임금 산정은 농가 배정 이후 근로 시작일부터 기산되며, 임금은 계절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통장개설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수령증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와 농장주는 기본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을 때에는 농장주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 근무시간, 휴게, 휴일

- 근무시간은 일 8시간으로 하되, 1일 최대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부여

- 매월 4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날짜에 대체 휴무를 제공하거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라. 숙식 및 생활 조건

-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숙소시설표를 교부해야 한다.
- 비닐하우스 등 부적합 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냉·난방 설비 및 온수 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단, 대한민국 법무부가 승인한 양식의 숙박은 가능하다.

- 근로자는 거주하는 동안 근로자 과실로 고용주 재산에 손해(건물,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손상, 파손 등)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고용주는 근로계약서에 숙식비 징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합의하여 숙식비 공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 고용주는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성주군, 출입국관서, 노동부 등에 신고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마. 교통비
- 입·출국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한다.
- 입·출국 시 국내 공항과 성주군 간 이동은 성주군에서 지원한다.

바. 보험
-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 계절근로자는 대한민국에 입국 후 15일 이내에 전 체류기간에 대해 질병·상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 시 사망자의 신체, 유해, 개인재산 등 베트남으로 귀국 절차 및 비용은 주한베트남대사관, 성주군, 다낭시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아.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나 임금 체불 등 사유 발생 시 성주군은 즉각 시정 조치하고 고용주가 불응 시 법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한다.

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차. 근로기간 중 계약해지
- 사증 신청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근로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별도 신고 없이 5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로를 태만히 하여 3회 이상 고용주에게 경고를 받은 경우, 성주군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해당 근로자를 본국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문제가 아닌 경우로 계약 해지 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지자체에서 새로운 근무처 알선 등 근로 계약을 지원해야 한다. (단, 대한민국 출입국관서의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은 후 근로를 개시한다.)
- 근로기간 중 근로자 본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된 경우 본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고용주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는 귀국 비용을 부담한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재해, 전쟁, 재난, 고용주 파산 등)로 계약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협의하여 귀국 비용을 부담하고, 성주군과 다낭시의 법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원을 고려한다.

카.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근로자는 대한민국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 받을 수 있다.

타. 근로계약서 및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제 발생 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한다.

5. 입국 및 출국

가. 계절근로자 송출에 따른 입·출국은 단체로 하며, 개별 입국은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성주군에서 초청을 하더라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 발급 심사 단계에서 불허되거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

다. 계절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출국

조치될 수 있다.

* 귀책 사유 : 무단결근, 무단 이탈, 업무방해, 경력 사칭, 고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로관계 법령 및 사회 통념상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 사용허가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년 10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하여 그 수익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환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위치 :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5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7,472㎡
- 주요시설 : 유리온실 1,845㎡, 비닐온실A 1388.81㎡, 비닐온실B 560㎡, 기타 부대시설 1식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허가방식 : 공개경쟁입찰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사 용 료 : 25,000,000원/년(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
  [※감정가액(2,373,155,600원) × 0.01 ≒ 23,731,560]
- 허가조건
  · 사용료는 1년 단위 선납(매년 산정·부과)
  · 사용허가 재산 관련 손해보험가입 및 공과금 등 부과금은 사용자 일체 부담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다. 주민지원계획

- 근거법령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급방법 : 사용료 징수 후 군 출연금으로 기금에 편성하여 마을지원

3. 향후일정

가. 2026. 10. : 성주군의회 의결

나. 2026. 11. :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사용허가계약

다. 2026. 12. : 운영준비 및 사용료 징수

라. 2027년 ~ : 징수한 사용료를 기금으로 편성하여 마을지원

4. 참고사항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나.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다.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

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성주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삭제<2018. 11. 8.>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초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 성주군의회 의결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결사항)

③「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6. 10. 23.(금)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302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성 주 군 수】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	【성 주 군 수】
○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 사용허가 동의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2027년도 정기분 성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다.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 주요 사업

가.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1) 사업목적

- 가야산의 우수한 산림치유 환경요소를 활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힐링공간 제공
- 당초 교환 대상 국·공유림 가감정 결과 토지 교환금액 차액 발생에 따라 교환 대상지 추가에 따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24. 5. 9.) 받은 내용을 변경 승인받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4. 10. ~ 2027. 5.

3) 소요예산

- 총사업비 : 5,500백만원(도비2,500, 군비3,000)

구분	회계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합계 (백만원)	5,500	500	1,000	400	700	2,900	
도비	2,500	-	500	200	350	1,450	
군비	3,000	500	500	200	350	1,450	

4) 사업규모

- <취득> 932,323㎡ <토지처분> 1,293,274㎡

5) 사업내용

- 성주 치유의 숲 조성 사업면적 79,000㎡

(치유센터, 명상길, 숲체험장, 숲속명상원, 세족장, 쉼터 등)

6) 기준가격명세

- 당초안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2024. 5. 9.)

(단위 : ㎡ , 천원)

구분	항목	소재지	지번	지적	㎡당 공시지가	기준가격
취득	토지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0.451	273,508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0.554	179,913
	소계			**931,201**		**453,421**
처분	토지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0.455	104,868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5,818	0.523	243,622
		초전면 용봉리	산67	235,000	0.364	85,540
	소계			**931,298**		**434,030**

– 변경안

단위 : (㎡ , 천원)

구분	항목	소재지	지번	지적	㎡당 공시지가	기준가격
취득	토지	가천면 용사리	산123	606,448	0.479	290,489
		가천면 법전리	산144	324,753	0.588	190,955
		가천면 법전리	산144-1	140	0.577	81
		가천면 법전리	1151	982	3.370	3,310
	소계			**932,323**		**484,835**
처분	토지	벽진면 용암리	산251	230,480	0.454	104,638
		벽진면 봉학리	산64-1	463,762	0.542	251,359
		초전면 용봉리	산67	417,721	0.372	155,393
		초전면 월곡리	산56-2	181,311	0.750	135,984
	소계			**1,293,274**		**647,374**

7) 계약방법

– 국유림법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4. 5. :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025. 7. :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경상북도)
– 2025. 9. : 치유의 숲 조성공사 착공
– 2025. 10. : 산림청 국유림 사용허가
– 2026. 8. : 교환 대상지 가감정 시행 (성주군)
– 2026. 11.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26. 12. : 산림청 토지 교환승낙서 제출
– 2027. 5. : 치유의 숲 조성사업 준공 및 교환 완료

나.「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토지) 취득

1) 목적 및 용도

-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됨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해당 필지를 취득하여 소규모 축사 및 빈건물 등 유해시설 철거를 통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사업기간

- 2025. 2. ~ 2027. 12.

3) 소요예산

- 5,0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일반회계)

4) 사업규모

- <토지매입> 22,332㎡

5) 사업내용

- 유해시설 정비사업(축사 철거 및 부지매입 등)

6)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연번	구분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기준가격	비고
계				18필지		22,332	2,085,946.4	
1	취득	토지	가천면 창천리	27	목장용지	2,676	270,365.2	농촌공간정비사업
2				28	목장용지	1,794	181,253.8	
3				28-5	답	630	63,651	
4				20-5	답	149	15,009.2	
5				21-2	답	19	1,913.9	
6				25-3	목장용지	1,329	132,545.6	
7				25	대	506	76,912	
8				25-4	답	1,144	114,094.9	
9				26	답	1,465	146,109.3	
10				686-1	답	2,876	183,009.4	
11				686-2	답	1,791	113,967.3	
12				751	목장용지	1,520	148,504	
13				751-1	답	1,548	146,853.6	
14				740	답	657	64,188.9	
15				740-2	답	2,133	208,394.1	
16				739-1	답	528	51,585.6	
17				735-1	답	1,269	123,981.3	
18				735	대	298	43,607.3	

※ 기준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함

7) 계약방법

- <토지매입> 협의매입

8) 추진현황 및 계획

- 2025. 2. :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선정
- 2025. 6.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5. 7. :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 2025. 10. : 감정평가 완료
- 2026. 7. : 의회 정책협의회 보고
- 2026.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 상정
- 2026. 12. :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농림부)
- 2027. 2. : 토지매입 및 보상완료
- 2027. 3. :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道)
- 2027. 3. ~ 12. : 사업시행 및 완료

다.「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행정재산(건물) 취득

1) 목적 및 용도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

2)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31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2027. 1. ~ 2029. 12.

4) 소요예산

- 3,400백만원(건축비 등/ 국비 1,200, 도비 300, 군비 1,900 / 일반회계)

5) 사업규모

- <건물신축> 연면적 720㎡(지상 2층), 부지면적 926㎡

6)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1동)

7) 기준가격명세

(단위 : ㎡ , 천원)

구분	방법	대상	소재지	지번	용도	면적	기준가격	비고
취득	신축	건물	성주읍 삼산리	31번지 일원	공동숙소	720	3,400,000	군유지

※ 기준가격은 건축비 등에 의함

8) 계약방법

- <건물 신축> 공개경쟁입찰

9) 추진현황 및 계획

- 2026. 9.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10. :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상정
- 2026. 10. :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 2026. 11. : 서면, 현장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27. 1. :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 2028. 1. : 공사 착공
- 2029. 10. : 공사 준공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성주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성주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

○ 본 안건은 당초 국·공유림 교환을 통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가감정 결과 교환금액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교환 대상지를 추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본 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향후 감정평가 및 교환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창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행정재산(토지) 취득 >

○ 본 안건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가천면 창천리 일원의 토지 18필지, 22,332㎡를 취득하여 축사 및 빈 건물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목적과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향후 가천면 창천지구뿐만 아니라 성주읍을 비롯한 관내 다른 지역의 유해시설 및 정비가 필요한 농촌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동숙소 신축」 행정재산(건물) 취득 >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주읍 삼산리 3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20㎡ 규모의 공동숙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와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향후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 시 실제 수용인원과 운영·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고령 유공자 가구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여건 변화를 반영,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과 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제8조 1항의4호)

나. 보훈예우수당 인상(안 제8조 2항)

다. 수당의 지급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조 4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물가상승 등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수당 지급방법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타 용어 수정(안 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4조 1호 및 3호)

다. 수당의 지급 방법을 추가 규정(안 제7조 3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3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용어 및 수당 지급방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참전유공자와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성주군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충시설인 백세각과 연계한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 아울러, 기념공원을 교육 및 관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주군 독립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초전면 고산리 525-1번지 일원
- 면 적 : 16,794㎡

○ 의견청취 내용

-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가. 군관리계획 결정(안)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독립운동 기념공원	역사공원	초전면 고산리 525-1번지	-	증)16,794	16,794	-	

나.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독립운동 기념공원	• 역사공원 신설 – A=16,794㎡	• 현충시설인 백세각과 연계한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의 장 및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함

다.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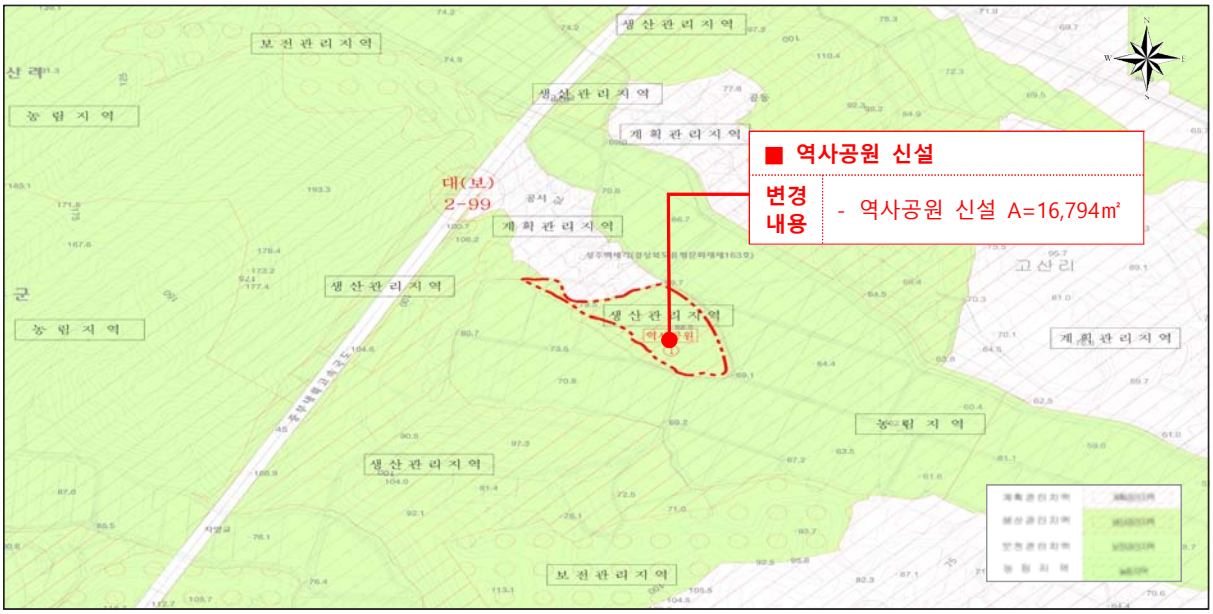

라. 공원조성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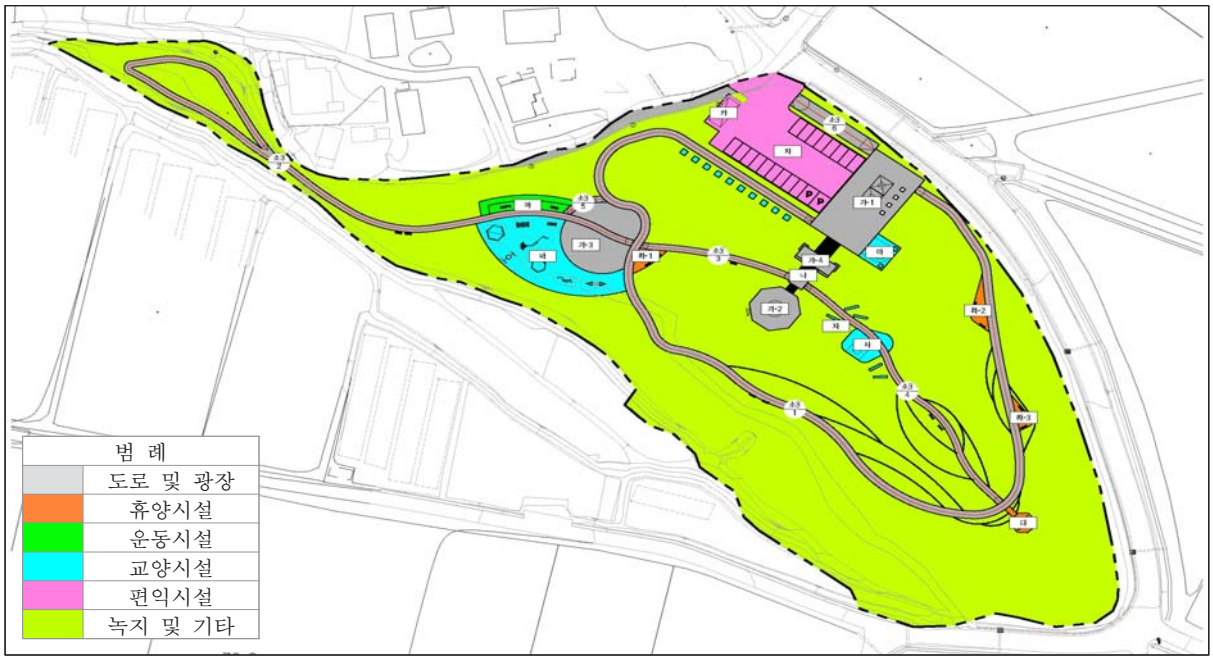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6. 9. : 입안 및 열람공고

❍ 2026. 10. : 관련부서(기관) 협의, 군의회 의견청취

❍ 2026. 11. :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6. 12. : 결정·고시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성주군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충시설인 백세각과 연계한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초전면 고산리 525-1번지 일원 16,794㎡를 역사공원으로 신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독립운동 기념공원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백세각을 비롯한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고, 역사교육 및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성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자원 연계 등을 통해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사업의 활용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개요

- 계 획 명 : 성주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 위 치 : 성주군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 면 적 : 7,911㎡

나. 의견청취 내용

·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공공청사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	증) 7,911	7,911	–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 공공청사 신설 – A = 7,911㎡	· 초전면 보건지소 이전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 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과

○ 2023. 0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확정

○ 2025. 04. 주민자치위원회 부지 선정

○ 2025. 06. 주민공청회 개최

○ 2025. 12.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6. 09. 주민의견청취, 군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 10. 군의회 의견청취

○ 2026. 11. 성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4. 군관리계획 현황 (현재)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7,911	100.0	건폐율 : 60% 용적률 : 200% 층 수 : 4층

< 군관리계획 현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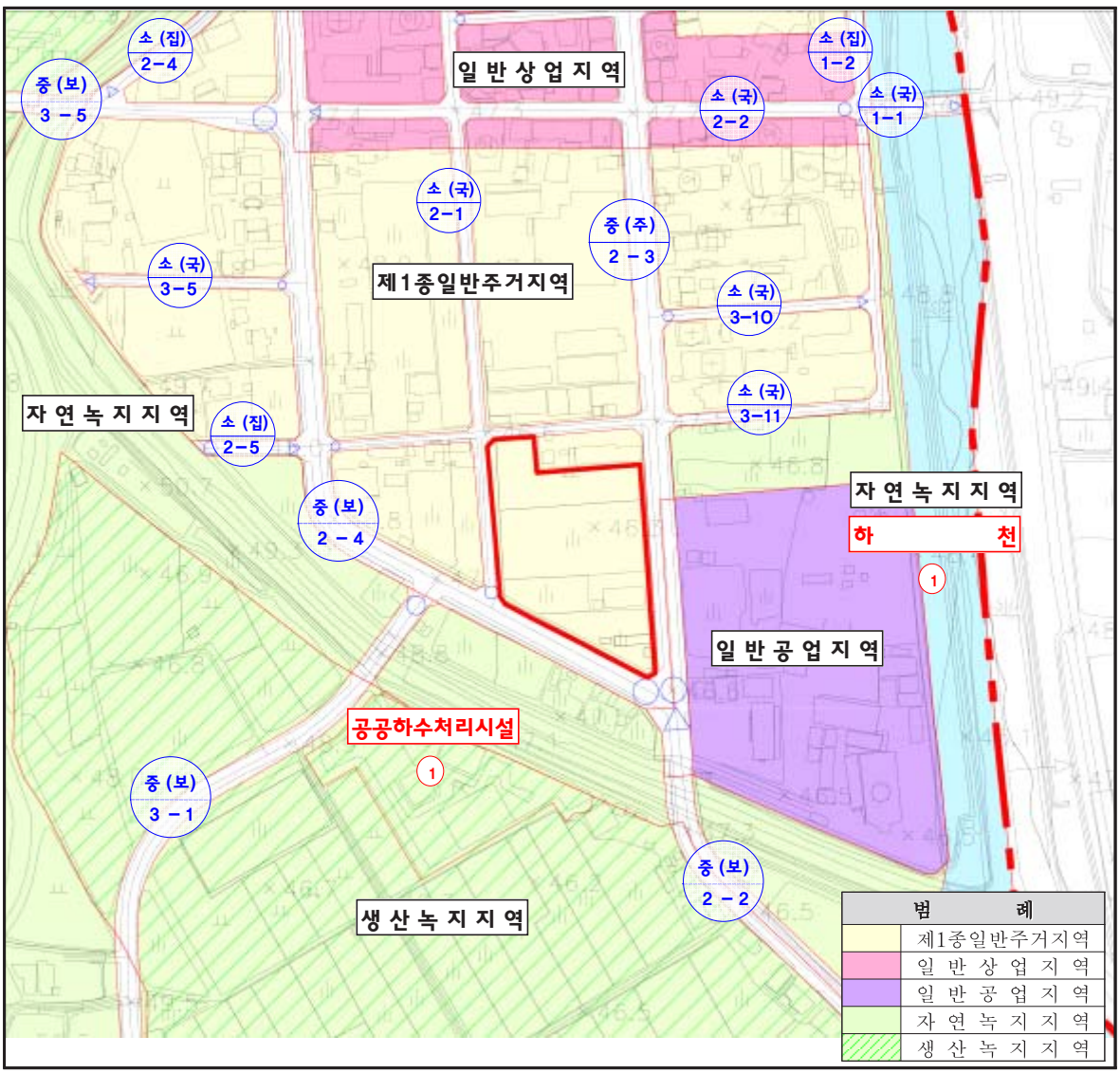

5.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청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1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공공청사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	증) 7,911	7,911	-	

< 군관리계획 결정(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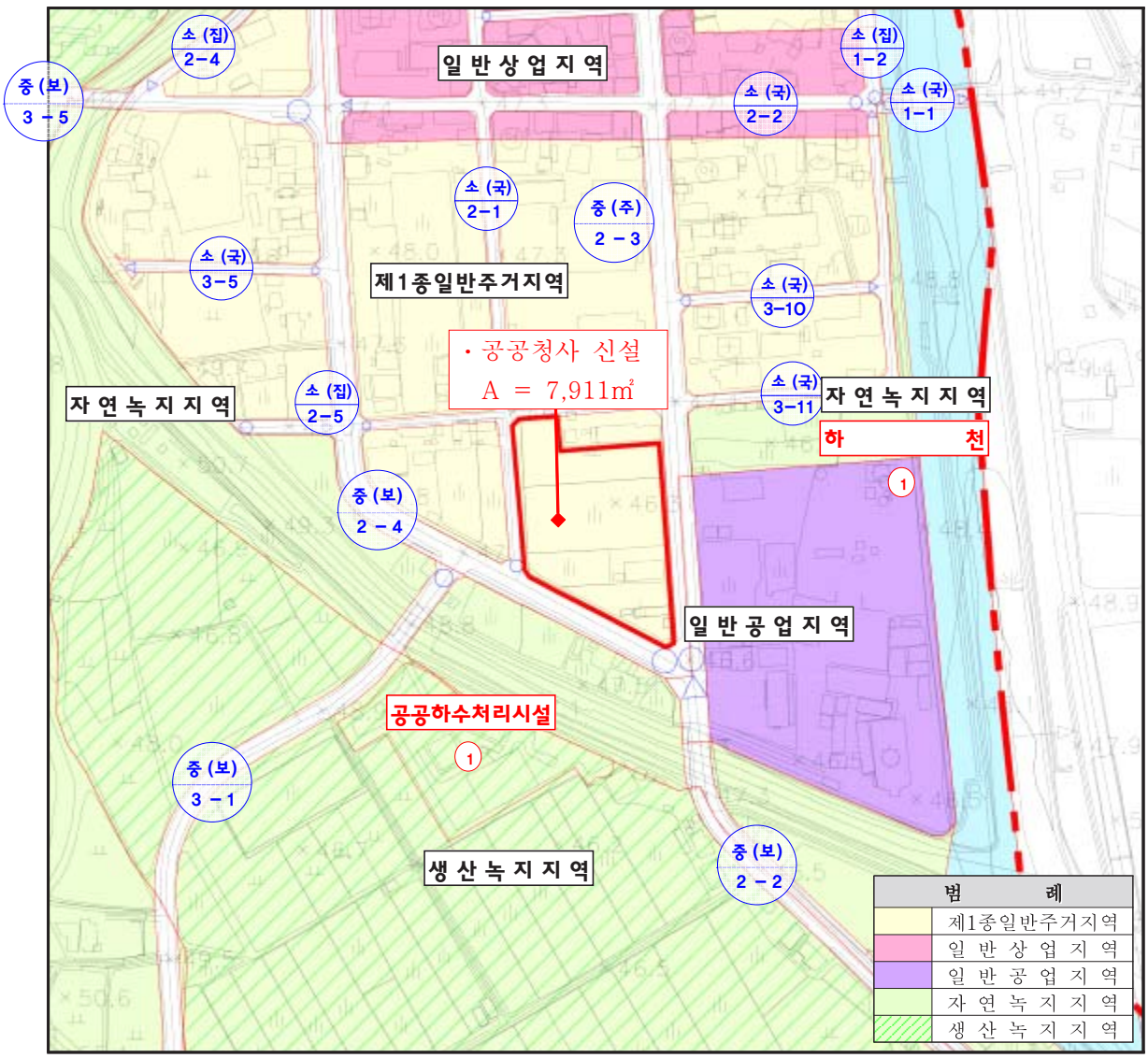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초전면 대장리 689-3번지 일원 7,911㎡를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초전면 어울림복합타운 조성은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이유

○ 쇠퇴하는 도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3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을 제정함.

○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절차로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여야 함.(기수립 : '19년 6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 명 :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나. 의견청취 내용

- 도시재생권역 및 권역별 도시재생전략

・지역의 여건·특성 종합 및 권역별 특화재생 전략방안 도출

- 성주군 도시재생 방향

・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력 회복, 지속운영 기반 기축을 목표로 한 발전전략 도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및 가능지역 도출(변경)

・도시재생 공모사업 유형별 규모와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재조정

・(기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변경)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개소

<기정>	
지역명	면적(㎡)
성주시장 일원 <사업완료>	11만㎡
성주읍사무소 일원 <사업완료>	12만㎡
초전면 소재지	13만㎡

<변경>			
지역명	면적(㎡)	유형	비고
성주시장 일원 <사업완료>	2.7만㎡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구역 조정
성주읍사무소 일원 <사업완료>	12만㎡	근린재생형 (일반근린형)	유지
초전면 소재지	13만㎡	근린재생형	유지
성주읍1	16.3만㎡	근린재생형	신규
성주읍2	13.9만㎡	근린재생형	신규
가천면	14.6만㎡	근린재생형	신규



다. 세부내용

○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안)

활성화지역	위치 및 면적	주요 내용	비고
성주시장 일원	성주읍 경산리 597-2 일원 (약 27,000㎡)	- 성주시장 등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활성화 - 주민 문화예술 활동, 주민 커뮤니틴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등 정주만족도 제고	구역 조정 <사업완료>
성주읍 사무소 일원	성주읍 경산리 2097-2 일원 (약 120,000㎡)	- 1단계(창의문화교류센터 등)과 연계하여 읍내 중심가의 상권활성화 및 정주여건 향상 도모 - 공공복지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유지 <사업완료>
초전면 소재지	초전면 대장리 618-6 일원 (약 130,000㎡)	- 성주 북부권역 중심지 기능회복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체류형 시설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	유지
성주읍1	성주읍 경산리 3-12 일원 (약 163,000㎡)	- 지적 불부합지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원도심 민간 자율적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 - 주거환경 정비 및 생활 밀착형 활력인프라 공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신규
성주읍2	성주읍 성산리 2095-8 일원 (약 139,000㎡)	- 기반시설 정비로 원도심 민간 자율적 주택정비 활성화 유도 - 원도심 주거환경 및 활력인프라 공급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신규
가천면	가천면 창천리 585 일원 (약 146,000㎡)	-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세대 및 계층별 공공복지 및 생활환경 조성	신규

3.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과

○ 2026. 01. :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6. 05.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26. 09. : 주민공청회 개최

나. 향후 추진계획

○ 2026. 11. : 군의회 의견 청취

○ 2026. 12. :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27. 01. :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계획 승인·고시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19년 수립된 성주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화된 지역 여건과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맞게 변경하고, 향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를 성주시장 일원, 성주읍사무소 일원, 초전면 소재지, 성주읍 1·2 및 가천면 등 6개소로 확대·조정하여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성주읍뿐만 아니라 각 읍·면의 도시재생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농업분야교류에 관한 협정 체결 변경 동의안

1. 제안이유

2026년 7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업분야교류 협정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베트남 지방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 권한이 다낭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정 체결 대상을 다낭시 화방면에서 다낭시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결대상 변경

1) 당 초 :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

2) 변 경 : 베트남 다낭시

나. 체결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체결

다. 체결내용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시기, 인원수 등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세부조건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 방안

3) 무단이탈(불법체류) 방지 및 수습을 위한 양 지자체간 협력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시 행정절차 지원 및 교육 지원 방안

5) 협정 발효, 개정 등에 대한 사항

6) 사업추진 중 보완사항 및 기타 상호 협력 방안 등

3. 추진실적

연도	도입 지자체	도입인원 (명)	이탈자 (명)	이탈률 (%)	비고
2023	필리핀 아팔릿시	260	3	1.1%	
	필리핀 마갈랑시	271	37	13.6%	
2024	필리핀 아팔릿시	390	6	1.5%	
	필리핀 마갈랑시	235	72	30.6%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3	2	6%	
	필리핀 로렐시	121	25	20.6%	
	라오스	153	-	-	
2025	필리핀 아팔릿시	402	14	3.5%	
	필리핀 루바오시	54	-	-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32	-	-	
	필리핀 로렐시	12	5	41.6%	
	라오스	1,295	1	0.007%	
	베트남 협득면	8	4	50%	
2026 상반기	필리핀 아팔릿시	207	23	11%	
	필리핀 루바오시	32	2	6.2%	
	필리핀 클라베리아시	20	-	-	
	라오스	1,197	6	0.5%	
	베트남 협득면	65	8	12.3%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면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업분야교류 협정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베트남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협정 체결 권한이 다낭시로 일원화됨에 따라 협정 체결 대상을 화방면에서 다낭시로 변경하고자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협정서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시기와 인원, 근로조건, 무단이탈 방지 및 출입국 지원 등 양 지자체 간 역할과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선발과 사전교육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베트남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협정 체결 대상을 변경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 사용허가 동의안

1. 제안이유

친환경에너지타운(온실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용허가하여 그 수익을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환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위치 :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55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7,472㎡
- 주요시설 : 유리온실 1,845㎡, 비닐온실A 1388.81㎡, 비닐온실B 560㎡, 기타 부대시설 1식

나. 공유재산 사용허가

-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허가방식 : 공개경쟁입찰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한 전자입찰
-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필요시 1회 연장 가능)
- 사 용 료 : 25,000,000원/년(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
  [※감정가액(2,373,155,600원) × 0.01 ÷ 23,731,560]
- 허가조건
  · 사용료는 1년 단위 선납(매년 산정·부과)
  · 사용허가 재산 관련 손해보험가입 및 공과금 등 부과금은 사용자 일체 부담
  · 사용허가 재산의 유지·보수,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
  · 사용허가 재산 제3자 전대 불가 및 연고권 배제

다. 주민지원계획

- 근거법령 : 「성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급방법 : 사용료 징수 후 군 출연금으로 기금에 편성하여 마을지원

3. 향후일정

가. 2026. 10. : 성주군의회 의결

나. 2026. 11. :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사용허가계약

다. 2026. 12. : 운영준비 및 사용료 징수

라. 2027년 ~ : 징수한 사용료를 기금으로 편성하여 마을지원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사용허가 대상은 성주읍 삼산리 551번지 일원의 7,472㎡ 규모 온실시설로, 사용기간은 5년, 연간 사용료는 2,500만원이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온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 수익을 주변마을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